

서울특별시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57
----------	-----

2022년 12월 16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

나. 제출일 : 2022년 10월 17일

다. 회부일 : 2022년 10월 21일

라. 상정일 :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5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2022년 11월 29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가. 제안이유

-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은 청년정책종합지원공간 시설로서, 금천구 지역 및 서울 청년들에 대한 종합상담 제공, 정책정보 집적 및 연계, 관계망 형성 지원, 지역연계 특화사업 운영, 청년 사회진입 촉

진 등을 위한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 「청년기본법」 제4조,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20조 및 제 2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 6조, 「서울특별시 청년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 6조에 따라
- 청년 종합 상담 및 공간 운영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 (단체)에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유형 : 시설형 민간위탁
- 위탁기간 : 10개월 (2023. 3. 1.~2023. 12. 31)
- 위탁사무 :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시설 관리·운영 사무
- 시설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210, 지상1층~3층
- 소요예산 : 517,000천원 (※'23년 예산 편성 결과에 따라 변동가능)
- 위탁사무 :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시설 관리·운영 사무
 - ① 청년 종합상담 및 자원 연계
 - ② 청년지원정보 집적 및 제공
 - ③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 운영
 - ④ 지역자율 프로그램 운영
 - ⑤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 ⑥ 그 밖에 청년문제 해소 대책과 관련한 사무 등
- 위탁대상 : 청년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 위탁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 시설규모 : 연면적 480.71 m²
- 시설구성 : 상담실, 회의실, 세미나실, 협업공간, 휴게공간 등
- 시설 위치도 및 사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20조(청년지원기관의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21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위탁운영 등)

나. 예산조치 : 2023년 예산 편성 추진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민간위탁 추진계획(미래청년기획단 -25526, '22. 7. 22.)
- 제6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22. 9. 2.) : 적정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 서울특별시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2022년 12월 31일)인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의 운영 및 시설관리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에 2023년 3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0개월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6. "중요내용"이란 위탁유형 변경,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와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이하 ‘동대문 오랑’)은 시설형 민간위탁¹⁾ 유형으로 2019년 12월 16일 ‘청년공간 동대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해 시의회 동의를 받아 2020년 7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해 왔음.

□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추진 경위

- '18. 11. 13. : 제6차 공유재산심의결과 적정(청년공간 동대문 조성)
- '19. 9. 19. : 제6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평가심의 적정
- '19. 12. 16. : 청년공간 동대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가결
- '20. 12. 15. :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시설 준공
- '20. 7. 23. :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체결
※ 위·수탁기간 : 2020.7.23.~ 2022.12.31. (3년), (사)서울유스랩
- '21. 2. 22. :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개소 및 운영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대시민 대상 시설 개관 지연

- ‘동대문 오랑’은 청년의 종합상담 및 자원연계, 청년지원정보 집적 및 제공,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 지역자율 프로그램 등을 위해 운영하는 청년공간 시설로, 2020년 7월 협약체결 이후 2021년 2월 22일 개관²⁾하여 (사)서울유스랩이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해 수탁자로 선정되어 운영해 왔음.

〈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현황 〉

- 위치/규모 : 동대문구 왕산로 210 지상 1~3층, 480.71m² (연면적)
- 위치도 및 시설사진
- 시설현황 : 상담실, 라운지, 공유주방, 회의실, 운영사무실 등

1) 시설형 민간위탁(예산지원형) : 서울시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의 운영 및 그에 수반되는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맡겨 그 명목과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함.
2) 코로나19 이용 제한으로 시설개관 지연



< 위치도 >



< 외부전경 >



< 내부전경(1층) >



< 다독다독(1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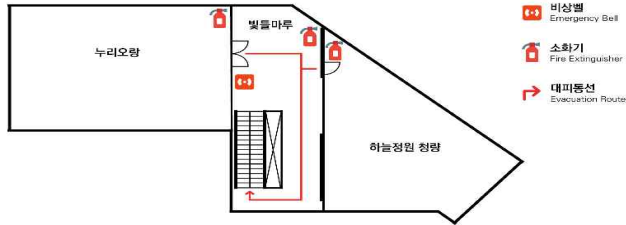


< 누리오랑(3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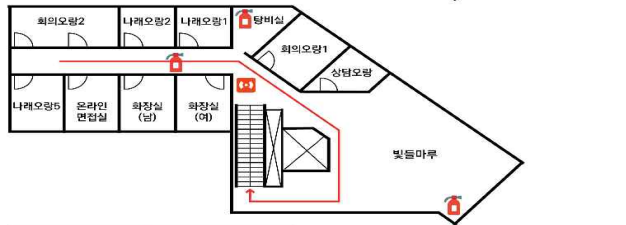


< 휴게공간(2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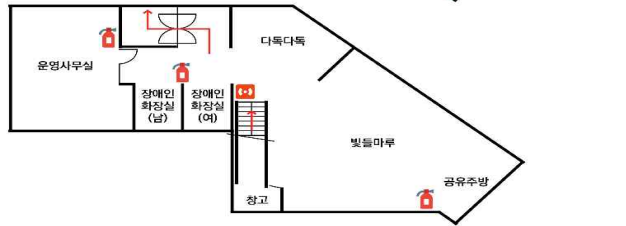
3F



2F



1F



층수	구역/격실 명칭	세부 용도	면적(m ²)
1층	다독다독	- 도서 이용(센터 내), 각종 소식지 비치	15.96
	빛들마루	- 스터디, 소규모 네트워킹 및 공연	72.27
	공유주방	- 다과 이용 및 간단 조리시설	4.90
	운영사무실	- 동대문오랑 운영사무	37.33
	창고(계단 하부공간)	- 각종 비품 및 운영물품 보관	8.55
2층	나래오랑1	- 공용복합기 이용실	6.12
	나래오랑2	- 보조상담실 및 비대면 프로그램 진행실	6.12
	나래오랑3~4	- 회의 및 스터디(6~8명)	12.24
	나래오랑5	- 독립 휴게실	8.41
	라디오랑	- 유튜브 채널 운영(촬영 및 녹음)	8.41

3층		- 온라인 면접 및 회의 공간 지원	
	회의오랑	- 소규모 회의 및 스터디(4명)	10.24
	상담오랑	- 대면/비대면 상담 업무	5.94
	빛들마루	- 스터디, 개인 사무 및 휴게 공간	67.2
	탕비실	- 식수 및 다과 이용	5.76
	누리오랑	- 강연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	74.66
	하늘정원 청량	- 야외 휴게 공간	77.32

- 운영시간 : 평일 10:00~22:00, 토요일 10:00~17:00 ※일요일·공휴일 휴관
- 이용대상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청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 시설관리 : 시민이용관리, 유지보수, 안전관리, 대관운영 등
- 물품관리 :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비품 및 소모품 관리

□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위탁사무 세부내용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운영 사무

분류	연번	세부사무
사업운영	1	청년 종합상담 및 자원 연계
	2	청년지원정보 집적 및 제공
	3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자율 프로그램 운영
시설운영	5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경우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기에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

는 서울특별시의회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동대문 오랑’은 2019년 12월 16일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동대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받아 운영하였고, 재계약을 위해서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며,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한 지도·점검 및 종합성과평가와 각종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최근 수탁기간 동안에 시장이 시행한 제16조의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18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동대문 오랑’에 대한 2022년도 종합성과평가 결과, 수탁기관인 (사)서울유스랩은 공동사무평가(사업인프라, 사업활동)와 개별사무평가(사업성과, 지도점검 이행노력), 사용자만족도(만족도 제고 노력) 평가 및 감점사례 등을 종합하여 총 70.18점을 득점하였는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종합성과평가 결과 75점 미만으로써 재위탁 공개모집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운영 종합성과평가결과 >

평가영역	평가범주	지표배점	득점
공통사무평가	사업인프라	22.00	13.68
	사업활동	17.00	10.37
개별사무평가	사업성과	38.00	33.22
	지도점검 이행노력	8.00	5.60
사용자만족도평가	만족도 제고노력	15.00	12.31
감점사례	협약사항 위반 (제3자 위탁금지, 협약이행보증내용 위반 등) ※협약사항 위반은 개별 건별로 2점씩 감점	-18.00	-8.00
합계		100.00	70.18

※ 출처: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_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운영-(2022.06)

- 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면, ‘동대문 오랑’ 동대문구 및 중랑구 2030 청년세대 니즈 조사를 실시하여 수요를 파악하고자 한 조치는 적절하였으나, 기관의 비전 전략체계도의 수정 보완이 필요하고, 기관비전과 추진전략, 기관이 추구하는 핵심가치를 제시하고, 당해연도 주요 사업의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받은바 있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반드시 재위탁 공개모집(재계약 배제) 해야 하는 경우 >

- ① 종합성과평가 결과가 75점 미만인 경우
- ②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결과 평가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 ③ 위탁기간 중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감사(회계감사 등) 결과 동일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시정조치하지 않은 경우
- ④ 위탁기간 중 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 성희롱·성폭력, 인권침해, 사업비 횡령, 부당 노동 행위 등 주요 비위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 ⑤ 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 ‘감사기관의 징계 등 제재(환수 등) 결정’을 받고 동 사안에 대해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③, ④, ⑤에 해당하는 기관 여부는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2022년 제6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타 자치구 청년센터의 정비기간과 일치시킬 수 있도록 위탁기간을 10개월로 조정하는 ‘조건부 적정’을 받았으므로 해당 기간 내에 자치구로 이관 협의를 완료해야 할 것이며, 청년을 위한 공간으로서 그 정체성과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최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결과 : 2022년 제6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22.9.2.)

위탁사무명	유 형		수탁 기관	위탁 기간	심의 결과	비 고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운영	재위탁	시설형	-	1년 10개월	조건부 적정	[조건] - 청년공간 재구조화 기조에 따라 자치구(서초, 강서) 청년센터의 정비기간과 일치시킬 수 있도록 민간위탁 기간을 10개월로 조정하고 해당 기간내에 자치구 이관 협의완료

※ 위원회 주관 : 조직담당관

⇒ 조건부적정 후 조건 이행하여 적정 전환('22.10.05)

- 이와 관련하여 청년관련 유사 공간 및 지원센터와의 통합 가능성, 역할과 기능의 협업 등에 대한 상위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지역별 청년특화사업이나 대외적 우수사례 성과창출과 연계하여 동대문 오랑만의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위탁사무들에 대하여 단순한 결과치를 뛰어 넘어 오랑이나 오랑 사업들의 발전적 변화를 증명하거나 측정할 수 있는 자료 축적과 제시가 요구되어야 할 것임.
- 덧붙여, 청년공간 민간위탁 사업에만 매년 5억원 규모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바, 이번 사업이 예산 투입 대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다 종합적이고 치밀한 사업 구상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정산결과**

<2020년 회계연도> ※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교부 (단위: 원)

센터명	구 분	예산교부액(A)	집행금액(B)	집행잔액(C)	집행률(B/A)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계	342,839,000	328,602,657	14,236,343	96%
	인건비	113,588,964	104,999,002	8,589,962	92%
	운영비	42,078,436	36,731,883	5,346,553	87%
	사업비	187,171,600	186,871,772	299,828	100%
	위탁수수료	9,800,000	9,800,000	-	100%

<2021년 회계연도> ※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교부 (단위: 원)

센터명	구 분	예산교부액(A)	집행금액(B)	집행잔액(C)	집행률(B/A)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총계	593,312,000	583,325,315	9,986,685	98%
	인건비	275,805,425	273,953,442	1,851,983	99%
	운영비	117,055,135	113,060,552	3,994,583	97%
	사업비	200,451,440	196,311,321	4,140,119	98%
	위탁수수료	9,946,000	9,597,670	348,330	96%

<2022년 회계연도> ※ 계약심사 미시행 (전년대비 5% 이내 예산증액) (단위: 원)

센터명	구 분	예산교부액(A)	집행금액(B)	집행잔액(C)	집행률(B/A)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총계	575,000,000	400,182,585	174,817,415	70%
	인건비	288,273,409	198,229,710	90,043,699	69%
	운영비	140,867,791	101,333,520	39,534,271	72%
	사업비	145,858,800	100,619,355	45,239,445	69%
	위탁수수료	9,610,000	-	9,610,000	0%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관리지침」에는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시 위탁비용을 산정하게 되는데, 최근 3년간의 결산자료 비교·분석 및 당해 연도 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 세부항목의 비율을 적정하게 산정해야 함.
- 그러나 사업의 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³⁾를 제외하고는 위탁사업비(수탁기관 세출예산) 중 인건비의 비율이 5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대문 오랑’은 2020년 매년 인건비 비중이 증가하여 2022년에는 인건비 비율이 50.13%를 차지하였는바, 주관부서는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적법절차에 따른 사업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망됨.

3) 불가피한 경우(예시) : 청소 등 성격상 인건비의 비율이 높은 사무

□ 2022년 제6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회의록

〈000 위원〉

- 지금 이런 센터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센터 예산을 보면 사업비는 30%가 안 되고, 30%가 안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랑 운영비로 나머지 70%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센터도 다 이렇게 운영되나요? 보통 그런가요? 사업은 요만큼 하고 그것을 관리한다고 사람이 모여가지고 돈 쓰고 이런 것으로 다른 모든 사업 센터들이 다 이런 건지, 이 오랑만 이런 건지 궁금합니다.

〈소관부서 [청년사업반]〉

- 민간위탁지침상 통상 50% 기준으로 사업비는 이 이상 확보하게 돼 있고,

〈000 위원〉

- 여기는 왜 30%? 29%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논의할 건 아닌데, 이게 사업을 위한 센터인지.

〈소관부서 [청년사업반]〉

- 통상 시설형 민간위탁이다 보니까 운영비 비중이 높은 경우고요. 다른 시설도 유사한 형태로 돼 있고. 현재 통상적으로 사업비가 비슷하게 한 30% 정도 배정이 돼 있거든요.

〈000 위원〉

- 알겠습니다. 사실확인만 한 겁니다.

- 아울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2.08.개정)」과 ‘예산의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 따르면 동의안과 예산안은 같은 회기에 상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향후 미래청년기획단은 ‘시의회 동의 및 보고 안건’의 경우 시의회 하반기 정례회(다음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개최되는 회기) 이전 회기에 제출 및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정례회 전에 동의안 의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민간위탁 관리지침 예산편성 기준 〉

5) 예산편성(주관부서)

- 대 상 : 민간위탁 조례(제4조의3 등)에 따른 시의회 동의 대상 사무
- ※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조례 제4의3 5항)
- 절 차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시의회 동의 → 예산안 의결
- 유의사항
- “시의회 동의 및 보고 안건”은 시의회 하반기 정례회(다음 연도 예산심의를 위해 개최되는 회기) 이전 회기에 상정될 수 있도록 운영평가위원회 회차 선택
- 법령이나 조례 제.개정,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회 동의 과정에서 보류 등 불가피한 때에만 예외적으로 동시에 상정 가능

- 최근 3년간 ‘동대문 오랑’의 지도점검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2020년 4건, 2021년 7건, 2022년 1건의 시정조치를 받은바, 다수의 지적이 있던 문제를 참고하여 재위탁 수탁기관 운영 시,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상의 지도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자체 점검을 강화해야 할 것임.
- 특히, ‘동대문 오랑’은 위탁사무 수행에 있어 제안서 평가시의 참여인력 전체를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여 민간위탁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공모제안서 상의 참여인력이 협약체결 이후 전원 교체된 사항은 위탁사무 수행상의 전문성과 관련한 부분으로 이에 대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협약서 상의 보완이 필요할 것임.
- 아울러,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 청년공간을 설치·조성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시의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의 여부와 자치구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13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57
----------	-----

제출년월일 : 2022년 10월 1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은 청년정책종합지원공간 시설로서, 동대문구 지역 및 서울 청년들에 대한 종합상담 제공, 정책정보 집적 및 연계, 관계망 형성 지원, 지역연계 특화사업 운영, 청년사회진입 촉진 등을 위한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 나. 「청년기본법」 제4조,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20조 및 제2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서울특별시 청년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6조에 따라
- 다. 청년 종합 상담 및 공간 운영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단체)에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개요

- 위탁유형 : 시설형 민간위탁
- 위탁기간 : 10개월 (2023. 3. 1.~2023. 12. 31)
- 위탁사무 :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시설 관리·운영 사무

- 시설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210, 지상1층~3층
- 소요예산 : 517,000천원 (※'23년 예산 편성 결과에 따라 변동가능)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사무 :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시설 관리·운영 사무
 - ① 청년 종합상담 및 자원 연계
 - ② 청년지원정보 집적 및 제공
 - ③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 운영
 - ④ 지역자율 프로그램 운영
 - ⑤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 ⑥ 그 밖에 청년문제 해소 대책과 관련한 사무 등
- 위탁대상 : 청년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 위탁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 시설규모 : 연면적 480.71㎡
- 시설구성 : 상담실, 회의실, 세미나실, 협업공간, 휴게공간 등
- 시설 위치도 및 사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20조(청년지원기관의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21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위탁운영 등)

나. 예산조치 : 2023년 예산 편성 추진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민간위탁 추진계획(미래청년기획단-25526, '22. 7. 22.)
- 제6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22. 9. 2.) : 적정

※ 작성자 :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 청년공간운영팀 이은지 (☎ 2133-4311)